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3년 11월 28일  
행정재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11월 15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중  
제2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11월 28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기획경제국장 한만석)

- 가. 제안이유
  -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일괄 정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 -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른 사무명 및 근거 법령 조항 삭제(안 별표 제1호가목 및 나목)
  - 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른 사무명 및 근거 법령 조항 정비(안 별표 제5호)
  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른 사무명 및 근거 법령 조항 정비(안 별표 제19호부터 제21호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정리하여 위임사무를 일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- 개정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법령이 개정사항이 시행된지 일정기간 경과하였음에도 적기에 반영하지 않음 점은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향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